

**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민간위탁 동의안**



안 산 시

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-3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」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,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(단체)에 위탁하여 정신 및 중독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☐ 위탁사무명

-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
☐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 및 제15조의3
- 「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제4조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, 제7조, 제17조
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○ 필요성

- 정신 및 중독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☐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

- 민간위탁 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○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
-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
- 정신 및 중독질환자의 욕구와 문제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
- 기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위탁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단원구 화랑로 387(고잔동)

○ 규 모

구 분	시설명칭	시 설 현 황	면적
지상1층	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	센터장실,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프로그램실, 문서고	557㎡
지상2층	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	센터장실,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프로그램실, 문서고	202㎡

○ 운영인력

시설명칭	총인원	정신전문	일반
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	36명	34명	2명
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	14명	10명	4명

○ 위탁예산 : 3,992,745천원(2026년)

(단위:천원)

시설명칭	2026년
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	3,019,021
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	976,714

□ 수탁자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

□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 【붙임 2】

□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□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안산시정신건강증진 조례」 제4조
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양 기관을 통칭하여 “센터 등”이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센터 등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센터 등의 효율적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

□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7조, 제17조 제5조(민간위탁 사무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
4. 재계약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

제17조(재위탁)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【붙임 2】

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

□ 위탁사무명 :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
검토항목	검토내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 위탁)에 따라 전문적 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의 한계성을 넘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함.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한 경험과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안정성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이 가능.
3. 경제적 효율성	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관리 및 전문성과 경험,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사업 효율성이 높고 행정비용 절감.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,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갖춰진 기관에 위탁하므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.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 및 전국 단위 정신 건강사업 성과발표회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축적하고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차기연도 사업에 반영.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분기별 실적 및 예산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, 연 2회 지도점검 조치 등 투명성 확보,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운영하여 사업 실적과 차분기 사업계획 검토하여 위탁사업을 수시 점검.

<p>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/p>	<p>경기도 31개 시군 중 97%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, 정신질환자 상담 및 치료연계 등 지속적 관리, 재활 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, 장애인 뿐만 아니라 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함.</p>
<p>검토 종합 의견</p>	<p>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수준 악화와 약한 사회적 지지망은 정신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,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하여 민간 위탁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</p>

[붙임 3]

(제2-1 쪽)

**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**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3(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4조(설치 및 운영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탁 경비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함
- 민간위탁을 통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		2027년	2028년	2029년
총 소요액			4,203,973	4,343,049	4,487,097
정신건강 복지센터	민간위탁금	인력운영비	2,270,333	2,358,195	2,449,457
		사업운영비	925,951	941,869	957,968
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	민간위탁금	인력운영비	829,764	861,861	895,201
		사업운영비	177,925	181,124	184,471

※ 2024~2026년 평균 상승분 3.3% 반영하여 산정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4. 작성자: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

(제2-2쪽)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 (2027년)	2차연도 (2028년)	3차연도 (2029년)	계
세 입		4,203,973	4,343,049	4,487,097	13,034,119
국비(기금)		1,225,501	1,266,060	1,308,018	3,799,579
도 비		340,251	351,491	363,183	1,054,925
시 비		2,638,221	2,725,498	2,815,896	8,179,615
세 출		4,203,973	4,343,049	4,487,097	13,034,119
인건비		3,100,097	3,220,056	3,344,658	9,664,811
운영비		305,102	310,380	315,750	931,232
사업비		798,774	812,613	826,689	2,438,076
재원 조달		4,203,973	4,343,049	4,487,097	13,034,119
의존 재원	소 계	1,565,752	1,617,551	1,671,201	4,854,504
	국비보조금	1,225,501	1,266,060	1,308,018	3,799,579
	도비보조금	340,251	351,491	363,183	1,054,925
자체 수입	소 계	2,638,221	2,725,498	2,815,896	8,179,615
	지방세수입	2,638,221	2,725,498	2,815,896	8,179,615
지방채					
기 금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